

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

주식회사 세아특수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달리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위원회는 제10조의 부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그 중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의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소집)

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 (소집권자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12시간 전에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의사진행 및 결의방법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진술 청취, 현장 실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.

제10조 (부의사항)

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"공정거래법")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 중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에 대하여 심사·승인을 하고,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11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2조 (간사)

-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또는 부장이 되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 및 위원회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13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11. 2. 24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